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7월 22일, 정부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7월 23일

다. 상 정 및 의 결 일 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8.)

상정·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7.)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28.)

상정·소위원장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u>미성년자</u> 3. ~ 6. (생략)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 _____ -----. 1. (현행과 같음) 2. <u>18세 미만인 사람</u> 3. ~ 6. (현행과 같음)

참고로, 개정안은 정부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안¹⁾ 중 하나로, 법령상 자격 취득·직종 요건 등에 관한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청년 세대의 취업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내용임.

1) 정부는 제21대국회인 2023년 11월에 동 8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임기만료 폐기된 바, 제22대국회에 재 제출한 것으로, 그 중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8일에, 자격 연령 제한 완화 내용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4년 9월 26일에 각각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정부 제출 연령 결격사유 완화 법률안>

연번	제출자	제출일	소관부처	개정안
1	정부	2024.7.16.	문화재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정부	2024.7.19.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정부	2024.7.22.	해양수산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	정부	2024.7.22.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정부	2024.7.22.	외교부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6	정부	2024.7.22.	경찰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정부	2024.7.22.	보건복지부	노후준비 지원법
8	정부	2024.7.23.	법무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 주요내용 검토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공공외교법」 제12조제1항2),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³⁾ 및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된 기타 공공기관임.

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는 등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지원하고 있음.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⁴⁾ 중 하나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

2) 「공공외교법」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데, 「민법」 제4조⁵⁾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음.

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18세인 사람도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재단의 청년교류사업⁶⁾의 규모가 코로나 이후 확장되는 추세⁷⁾이므로, 향후 청년 임원을 활용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여러 청년교류사업을 확대·발전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재단에 따르면 재단의 역대 임원 중 취임 시점의 연령 기준 최연소자가 45세⁸⁾로서 결격사유의 연령기준을 1년 단위로 완화하여도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별 법률로 규율되는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재단들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할 수 있음.

<재단 임원 결격사유 관련 입법례>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5)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6) 한일대학생교류, 한중청년교류, 한베청년교류, KF 글로벌챌린저 해외 인턴십, KF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등
- 7) ('20) 59명 → ('21) 176명 → ('22) 198명
- 8) 역대 최연소 임원 연령

직책	성명	임용시 연령
비상근이사	이**	45세

구분	관련 법률	임원 결격사유 미성년자 규정 여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⁹⁾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장 ¹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9조 ¹¹⁾	×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0조 ¹²⁾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법」 제7조 ¹³⁾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¹⁴⁾	×

외교부와 재단은 개정안에 대해 18세인 청년이 임원이 될 경우 미래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공공외교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도출 및

9) 제8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④ 시·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11)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2)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14)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연공서열 타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건)

- 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라는 연령 제한 규정은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임원직의 특성상 실익이 없어 삭제하기로 함.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대안반영폐기